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전제품 포장재가 경감된다

현대산업사회의 발전으로 널리 보급된 가전제품중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디셔너, 퍼스날 컴퓨터 등 6개품목의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에 대해서는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 '96. 1. 1부터 년차별 감량화 목표율에 따라 당해년도 감량화 자체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자체 계획서 및 전년도 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제조·수입을 함께하는 경우는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또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세부 고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환경부고시제 1995-90호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용 완충재에 대한 감량화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8월5일

환 경 부 장 관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이하 “제조·수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완충재(이하 “완충재”라 한다)의 회수·재활용, 처리(매립에 의한 방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및 사용량 감량화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가전제품의 범위)

제조·수입자가 완충재의 회수·재활용·처리 및 사용량 감량화를 위하여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가전제품의 범위는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이상인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디셔너, 퍼스날 컴퓨터(주변기기중 모니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회수·재활용·처리 및 사용량감량목표율)

제2조에서 정한 가전제품(이하 “대상 가전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조·수입자가 자체계획 수립시 반영 하여야 할 완충재의 연차별 회수·재활용·처리 및 사용량 감량목표율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자체계획의 수립·제출)

① 제조·수입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대상가전제품 품목별 생산량 및 완충재 사용량
2. 부피감소, 재질대체등에 의한 완충재 사용량 감량목표율 또는 회수·재활용·처리목표율 및 그 방법

② 제조·수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의 자체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동계획의 작성시에는 전년도 자체계획의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년도 자체계획 추진실적(이하 “전년도 실적”이라 한다)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수입자는 작성된 당해년도 자체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대상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당해년도 자체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자체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제조자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수입자는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제조·수입을 함께 하는 자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또는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 자체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중 [별표]에서 정한 목표년도의 회수·재활용, 처리 및 사용량 감량목표율을 목표년도 이전에 미리 달성한 자는 다음년도에 한하여 자체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회수·재활용·처리한 양의 감량화 인정)

①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자가 감량화한 것으로 보는 “회수·처리한 양”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수입자가 직접 회수·재활용·처리한 양
2. 제조·수입자가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등에 위탁하여 회수·재활용·처리한 양

② 제조·수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재활용·처리한 양을 감량화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실적 작성시 다음 각호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수·재활용·처리증빙서류 사본(제조·수입자가 직접 회수·재활용·처리한 경우에만 한다)
2. 회수·재활용·처리 위탁계약서 사본 및 회수·재활용·처리한 자의 회수·재활용 처리증빙서류 사본(회수·재활용·처리를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완충재의 회수·재활용·처리촉진)

① 제조·수입자는 완충재의 회수·재활용·처리를 위하여 완충재의 원료생산자, 완충재 제조자, 가전제품 유통자 및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등 재활용사업자단체등과 협력하여 회수·재활용·처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제조·수입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재의 회수·재활용·처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사업추진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의견조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조·수입자의 당해년도 자체계획 및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적정여부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또는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